

등록번호	안전치수과-5114
등록일자	2015.3.18.
결재일자	2015.3.1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재난관리팀장	안전치수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부구청장
육화선	代정일근	신현태	이명균	03/19 조인동
협 조	여성가족과장 주택과장 푸른도시과장 보건위생과장	김선옥 송광덕 양종수 박정숙	어르신청소년과장	이정근

## 2015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



서대문구  
안전치수과

# 2015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

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고자 함.

## I 추진근거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계획 [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-1061(2015.3.9)]

## II 추진개요

### 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

- 관내 놀이시설 수 : 총 215개소 (2015. 3. 18 현재)
  - 운영 : 208개소, 이용금지 : 7개소
  - 부서별 어린이놀이시설 운영(이용금지) 개소수

주택과	푸른도시과	여성가족과	어르신 청소년과	보건위생과	안전치수과
133 (5)	43	28 (2)	2	1	1

### ○ 운영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

(단위 : 개소)

시설 수	설치검사			배상책임보험가입			안전교육이수		
	검사	미검사	검사율	가입	미가입	가입률	이수	미이수	이수율
208	208	0	100%	178	30	85.6%	202	6	97%

※ 부서별 상세 이행실태 붙임1 참조



## ■ 관리주체(소유자)의 의무

구 분	의무의 내용
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치검사 :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</li> <li>정기시설검사 :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</li> </ul>
안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·보관</li> <li>※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발견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</li> </ul>
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, 안전관리자 변경시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, 이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</li> </ul>
보험가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</li> </ul>

## IV

### 안전점검 실시계획

#### ■ (1단계) 관리주체 자체 점검

- 점검대상 : 주택단지, 어린이집 등 215개소 전수점검
- 점검기간 : 2015. 3. 19 ~ 3. 27 (9일간)
  - ※ 도시공원 어린이놀이기구는 4.3일까지 (: 관리주체 1, 놀이기구 43개소)
- 점 검 자 : 어린이 놀이기구 관리주체(안전관리자)
- 점검방법 : 놀이기구별 점검표(붙임2, 서식1)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 조치

#### < 중점 점검내용 >

- ▶ (공 통) 장애물의 적재, 바닥재의 굳어짐·패임, 구조물의 변형(휨, 틀어짐, 부식, 녹슴), 볼트·나사의 풀림, 하강지점 충격완화재(모래, 고무) 상태
- ▶ (놀이기구) 미끄럼틀 보호벽·난간·계단·활강지점 요철의 파손, 시소 무게균형,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, 그네 고리 풀림, 베어링 윤활상태, 체인의 틀어짐, 좌석판 높이,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,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

○ 점검결과 제출기한

- 2015.3.31 : 관리주체 → 해당부서 → 안전치수과 제출 (붙임2,서식2)

※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은 4. 3일까지 제출

■ ( 2단계 ) 민 · 관 합동점검

○ 점검기간 : 2015. 4. 8 ~ 4. 10 (3일간)

○ 점검대상 : 11개소 표본점검 (전체시설의 5%)

< 중점 선정대상 >

- ▶ 자체점검 미실시,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미이행시설 우선 선정
- ▶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

○ 점검자 : 민 · 관 합동점검팀(안전치수과+소관부서+민간전문가) 구성, 점검

\* 민간전문가 : 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지원기관, 제조·유지관리 업계 등 종사자 활용

○ 점검방법 :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, 안전관리 의무이행 여부 확인 · 점검 (붙임2,서식3) 및 행정지도 실시

< 중점 점검내용 >

- ▶ (안전관리 실태점검)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·점검
- ▶ (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인점검)
  - 설치검사,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상태(붙임3)
  - \* 이용금지 안내표지,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, 놀이기구 결박 등
  - 안전관리 교육이수, 책임보험 가입,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·점검

○ 점검결과 조치

- (현장조치)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

- (수리·교체) 보수·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약속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'시정명령' 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

- (안전진단) 노후 · 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

○ 점검결과 제출 : 4. 14일까지 서울시에 제출(붙임2,서식4)

## V

## 행정 사항
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이행 확인·실시 : 해당부서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철저

- 붙임 1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이행 현황 1부.  
2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(양식) 1부.  
3.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방법 1부.  
4.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(요약) 1부. 끝.